행정심판 재결례 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글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사 건	2014-○○○○○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청 구 인	이○○
피청구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심판청구일	2014. ○. ○.

❖ **주문** 피청구인이 2014. ○. ○. 청구인에게 한 벌점 1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 ○. 청구인에게 한 벌점 1점 부과처분을 취소하거나 동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 **이유**

Ⅰ. 사건개요

청구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2008년 피청구인에게 작성·제출한 '전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정~용진) 건설공사 소양대교 상부구조물 변경설계'(이하 '이 사건 설계'라 한다)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벌점 2점을 사전통지 하자, 청구인이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벌점이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 ○. 청구인에게 벌점 1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설계의 원안설계가 수행된 2006년 ○월에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하지 않았고, 변경설계가 진행된 2008년 ○월에는 이 사건 회사에 재직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변경설계와 관련된 문서 등 어디에도 청구인의 참여 기록이 없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의신청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의심사위원회에서 벌점처분이 아니라 경고처분을 한다면 수용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이 사건 처분을 수용한 적이 없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Ⅲ.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구조부 팀장으로 재직(2007. ○. ○. ~ 2009. ○. ○.) 중이던 200○. ○. ○. 이 사건 설계의 초기단계가 완료되었고 최종 준공도서도 청구인의 재직기간 중인 200○. ○. ○. 완료되는 등 청구인은 이 사건 설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구조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바, 업무절차 상 구조부 팀장은 이 사건 업무와 관련된 실질적인 최종 결재권자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업무에 참여한 바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였고 부실벌점 이의제기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과하였는데, 당시에 청구인은 모든 사실을 자인하고 피청구인의 벌점 경감 조정안을 수용하였다.

Ⅳ. 관계법령

- 구 건설기술관리법(2008. 3. 21. 법률 제8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4제1항, 제4항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2008. 3. 14. 국토해양부령 제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6제1항, 별표 8

Ⅴ. 이 사건 처분의 위법 · 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구「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4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설계 등 용역업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자 등이 설계 등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하고, 같은 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6제1항, 별표 8에 따르면, 설계 · 설계감리 등 용역업자 및 용역참여기술자에 대한 벌점 측정기준으로 '용역 참여기술자 업무관리의 소홀'(3.8번)과 관련하여 참여예정기술자가 실제의 과업수행시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벌점 3점, 참여기술자의 업무범위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다르거나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점 1점 또는 2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구조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업무에 참여하였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벌점 이의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처분을 수용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건설기술관리법」제21조의4제1항에 따르면 건설기술자 등이 설계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것을 벌점부과처분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구조계산서에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의 기명 · 날인만 있을 뿐 청구인의 기명 · 날인이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구조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였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점, 피청구인의 이의심사위원회에서도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구조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사실 이외에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점, ○○○의 진술취지는 ○○○이 2008년 이 사건 설계 당시 청구인에게 변경설계 관련 사항을 보고하였다는 취지일 뿐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는 아닌 점, 청구인이 이의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처분(벌점처분)이 아니라 경고처분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위 위원회에서 이 사건 처분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 3.8항을 제시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을 참여기술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참여예정기술자로 보거나 청구인이 감독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달리 청구인이 위 3.8항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 3.8항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

